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범업소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및 식품진흥

기금 사업에서 모범업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20조 및 제61조)

- 1) 소비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는 대상에서 모범업소를 삭제하도록 함
- 2)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도록 함

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범위 확대(안 제32조의2)

- 1)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기술지원 대상 확대하도록 함
-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탁업무 범위를 위생등급 신청서 접수,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 서류 발급까지 확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신청의 접수, 위생상태 평가 및 지정
2.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위생상태 평가 및 지정
3. 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지원

제61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6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① ----- ----- -----.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삭 제>	<삭 제>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				
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의 위탁) -----	업무의 위탁) -----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	-----		
수·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	-----	-----		
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	-----	-----		
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	-----		
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	-----		
원에 위탁한다.	-----.	-----.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위생등급 지정 신청의 접수,	위생등급 지정 신청의 접수,		
대한 기술지원	위생상태 평가 및 지정	위생상태 평가 및 지정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	2.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2.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 연장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 연장		

<u><신 설></u> 3. ~ 6. (생 략)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 10. (생 략) 11. <u>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u> 12. · 13. (생 략) 14.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 16. (생 략) 17. 「<u>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u>」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생 략)	<u>을 위한 위생상태 평가 및 지정</u> 3. <u>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지원</u>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61조(기금사업)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u><삭 제></u> 12. · 13. (현행과 같음) 14.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제22조제1항----- ----- ----- ----- ----- 15. · 16. (현행과 같음) 17. 「<u>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u>」 제21조제5항----- ----- ----- 18.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